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규정 신설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0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 목 차

|                                                             |   |
|-------------------------------------------------------------|---|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3201)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 신설(안 제36<br>조제2항 단서 신설) ..... | 2 |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3201)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26.
3. 회 부 일 : 2024. 08.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1.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 신설(안 제36조제2항 단서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략)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② -----<br>-----<br>-----<br>-----<br>-----<br>-----<br>-----<br>-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
| ③ ~ ⑨ (생략)                                                                                                                                      | ③ ~ ⑨ (생략)<br><br>부칙<br><br>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sup>1)</sup>에 따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sup>2)</sup>)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시설물 설치로 빚어지는 교통혼잡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교통유발 원인자(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행법 제36조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임<sup>3)</sup>.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그런데, 최근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커피, 햄버거 등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승차구매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sup>4)</sup>.

이러한 승차구매점은 다른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상점과는 달리 영업 구조 상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승차구매점 이용차량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차량 대기가 승차구매점 외부로 발생하여 도로를 점유하게 됨에 따라 그 도로의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의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주게 됨<sup>5)</sup>(참고2. 참조).

그러나 2024년도 6월 기준 전국 968개소의 승차구매점 중 92.1%인 862개소가 연면적이 1,000㎡ 미만인바 현행법 상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sup>6)7)</sup>.

---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국토교통부, 명지대학교,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제도도입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1.12.

5) 국토교통부, 명지대학교,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제도도입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1.12.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면적별 승차구매점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 합계         | 1,000㎡미만   | 1,000㎡이상<br>2,000㎡미만 | 2,000㎡이상<br>3,000㎡미만 | 3,000㎡이상<br>4,000㎡미만 | 4,000㎡이상<br>5,000㎡미만 | 5,000㎡이상 |
|-------------|------------|------------|----------------------|----------------------|----------------------|----------------------|----------|
| <b>전국개소</b> | <b>968</b> | <b>892</b> | <b>55</b>            | <b>10</b>            | <b>3</b>             | <b>2</b>             | <b>6</b> |
| 비율(%)       | 100.0      | 92.1       | 5.7                  | 1.0                  | 0.3                  | 0.2                  | 0.6      |

\*자료 : 국토교통부 (2024.6월 기준) (지자체별 현황은 참고3. 참조)

개정안은 승차구매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경우에도 사업지 외부에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승차구매점이 유발하는 교통량에 대한 적정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해당 시설이 유발하는 교통량에 비례하여 도시교통개선사업 재원으로의 환원이 가능하게 하며, 현행법 제38조8)에 따른 부담금 경감 규정을 통한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7항에서는 시장이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면적 50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총 연면적에 대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총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승차구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면적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존재하나 이 경우도 최근 3년간 23건에 불과함(참고4. 참조).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sup>9)</sup>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승차구매점’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이를 예측할 수 없고,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그 뜻이 모호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로그랩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9) 예시 : 승차구매점 부지내 차량 대기공간 확보 시 부담금 경감 등

(국토교통부, 명지대학교,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도입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1.12. p.10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sup>10)</sup>에서도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단서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법률에서는 ‘승차구매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sup>11)</sup>, 「도로법」 제61조제2항<sup>12)</sup>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함. (서울특별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1.06. 최종 검색.)

(예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1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6항<sup>13)</sup>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로 정의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의 문구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로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승차구매점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sup>14)</sup> 산정,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sup>15)</sup>에

---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13)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14) 특정시설로부터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하여 주변의 교통 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를 의미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내부 심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늦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국토교통부)

승차구매점은 교통유발이 상당함에도 면적이 작아 그간 부과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었으나 교통혼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를 위해 면적 기준 예외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개정안은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에 부과대상, 부과방식, 경감요건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규제 신설에 따른 관련 심사 장기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3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기가 필요함.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영향 정도, 부담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구체적 내용·규모 등 부담금 부과 타당성 및 요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바(「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요건 미흡<sup>16)</sup>),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

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참고1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

- (목적) 교통유발 원인자(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1990~)
  -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원 중 하나
- (대상)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건축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 \*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16)
  - \*\* 공동·분할 소유 시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되, 160㎡ 미만인 경우 면제
  - \*\*\* 전년도 8.1일부터 해당연도 7.31일까지 1년분을 10.16일부터 10.31일까지 납부
- (면제) 주한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그 외 교통량이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시설물
- (경감) 주차장 유료화, 차량부제 등 법 上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소 유도
  -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경감률은 조례로 다르게 규정 가능
- (산정기준)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별표 3·4)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상향(100%) 또는 하향(-50%) 가능
- (사용)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 등에 사용
  - \* 해당 특별회계 설치는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현재 49개 지자체(광역시8, 기초41)가 운영
-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부 과     |         | 징 수     |         | 징수율   |
|------|---------|---------|---------|---------|-------|
|      | 건 수     | 금 액(a)  | 건 수     | 금 액(b)  | (b/a) |
| 2023 | 336,439 | 542,073 | 322,414 | 523,873 | 96.8  |
| 2022 | 319,306 | 521,170 | 295,444 | 507,890 | 97.5  |
| 2021 | 302,651 | 481,884 | 278,667 | 470,221 | 97.6  |

자료 : 국토교통부

## 참고2

## 승차구매점 교통유발계수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산출내용)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 3 관련) |        |      |                                                                                   |              |                  |                 |                 |
|------------------------|--------|------|-----------------------------------------------------------------------------------|--------------|------------------|-----------------|-----------------|
| 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류                                                                               | 도시규모(단위 : 명) |                  |                 |                 |
|                        |        |      |                                                                                   | 100만 이상      | 50만 이상 ~ 100만 미만 | 30만 이상 ~ 50만 미만 | 10만 이상 ~ 30만 미만 |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1.66             | 1.64            | 1.22            |
|                        |        | 나    | 일반음식점                                                                             | 2.56         | 2.48             | 1.59            | 1.48            |
|                        |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4.80             | 2.40            | 2.12            |
|                        |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1.46             | 1.32            | 1.06            |
|                        |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1.16             | 1.02            | 1.02            |
| - 중략 -                 |        |      |                                                                                   |              |                  |                 |                 |
| 18                     | 승차구매점* |      |                                                                                   | 32.75        | 32.75            | 32.75           | 32.75           |

\* 부록.9 승차구매점 통행조사 자료에 의하면 차량유발원단위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는 달리 입지한 도시규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승차구매점 교통유발계수는 32.75로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 국토교통부, 명지대학교,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 도입방안연구」 최종보고서, 2021.12. p.105.

### 참고3

### 면적별 · 지자체별 승차구매점 현황

(2024. 6월 기준)

| 구분      | 합계    | 1,000㎡미만 | 1,000㎡이상<br>2,000㎡미만 | 2,000㎡이상<br>3,000㎡미만 | 3,000㎡이상<br>4,000㎡미만 | 4,000㎡이상<br>5,000㎡미만 | 5,000㎡<br>이상 |
|---------|-------|----------|----------------------|----------------------|----------------------|----------------------|--------------|
| 합계(개소)  | 968   | 892      | 55                   | 10                   | 3                    | 2                    | 6            |
| 비율(%)   | 100.0 | 92.1     | 5.7                  | 1.0                  | 0.3                  | 0.2                  | 0.6          |
| 서울특별시   | 55    | 50       |                      | 2                    |                      | 1                    | 2            |
| 부산광역시   | 75    | 67       | 4                    | 3                    |                      |                      | 1            |
| 대구광역시   | 70    | 58       | 12                   |                      |                      |                      |              |
| 인천광역시   | 31    | 28       | 2                    |                      |                      |                      | 1            |
| 광주광역시   | 48    | 45       | 3                    |                      |                      |                      |              |
| 대전광역시   | 35    | 30       | 5                    |                      |                      |                      |              |
| 울산광역시   | 23    | 23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7     | 3        | 2                    |                      | 1                    |                      | 1            |
| 경기도     | 278   | 258      | 13                   | 4                    | 1                    | 1                    | 1            |
| 강원특별자치도 | 30    | 29       | 1                    |                      |                      |                      |              |
| 충청북도    | 33    | 30       | 2                    |                      | 1                    |                      |              |
| 충청남도    | 44    | 44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 38    | 38       |                      |                      |                      |                      |              |
| 전라남도    | 25    | 25       |                      |                      |                      |                      |              |
| 경상북도    | 67    | 62       | 5                    |                      |                      |                      |              |
| 경상남도    | 66    | 63       | 2                    | 1                    |                      |                      |              |
| 제주특별자치도 | 43    | 39       | 4                    |                      |                      |                      |              |

자료 : 국토교통부

## 참고4

###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최근 3년)

○ 연도별(2021년~2023년)

| 구 분   | 부 과 |            | 징 수 |            |
|-------|-----|------------|-----|------------|
|       | 건 수 | 금 액(원)     | 건 수 | 금 액(원)     |
| 합 계   | 156 | 72,884,383 | 156 | 72,905,703 |
| 2023년 | 58  | 27,075,718 | 58  | 27,080,488 |
| 2022년 | 51  | 24,090,723 | 51  | 24,092,683 |
| 2021년 | 47  | 21,717,942 | 47  | 21,732,532 |

○ 면적별 부과(2021년~2023년)

| 구 분                  | 부 과 |            | 징 수 |            |
|----------------------|-----|------------|-----|------------|
|                      | 개소  | 금 액(원)     | 개소  | 금 액(원)     |
| 합 계                  | 58  | 72,884,383 | 58  | 72,905,703 |
| 1,000㎡미만*            | 23  | 32,593,412 | 23  | 32,593,412 |
| 1,000㎡이상<br>2,000㎡미만 | 25  | 25,637,432 | 25  | 25,658,752 |
| 2,000㎡이상<br>3,000㎡미만 | 5   | 2,688,775  | 5   | 2,688,775  |
| 3,000㎡이상<br>4,000㎡미만 | 1   | 1,003,671  | 1   | 1,003,671  |
| 4,000㎡이상<br>5,000㎡미만 | 1   | 1,621,530  | 1   | 1,621,530  |
| 5,000㎡이상             | 3   | 9,339,563  | 3   | 9,339,563  |

\* 위 표에서 1,000㎡미만인 경우란, 시설물 총 연면적은 1,000㎡ 이상이나, 해당 시설물 중에서 승차구매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000㎡미만인 경우임.